

문서번호	교육문화과-108211
결재일자	2015.8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30호

주 무 관	도 서 관 성 팀 장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	도 서 관 장 과
	이수경	유진숙	代조진희	장기현	08/26	정연찬		
협 조	규제개혁팀장		강성문					
	예산팀장		이정심					
	★주무관		김경문					
	주무관		代김경문					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 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	
사업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	예산팀조 ()
이해관계인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업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- 관련규정** : 『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- 개정사유** :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에 따른 보조금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조직 변경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자격 수정
- 주요 개정내용**
 -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역별 구성 : 제14조
 -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: 제35조
 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(제명 띄어쓰기 등)
- 추진일정**
 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9. ~ 10월.
 - 구의회 상정 및 공포 : 2015. 10. ~ 11월.

기획재정국 (교육문화과)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도서관 운영, 독서문화활동 진흥 등 내용 수정을 통하여 도서관 관련 법령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.

I 개정배경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 - 지방보조금 교부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

II 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현황

-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제정 및 최종 개정일 : 2007. 11. 12, 제정(2013. 5. 31 최종 개정)

III 개정사유

- 행정조직 변경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자격 수정 필요
 - ⇒ 행정관리국장에서 소관국장
- 도서관 권역별 운영에 따른 권역별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
 - ⇒ 권역별 도서관 운영에 따라 권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

IV 개정개요

- 기간 : 2015. 7. ~ 9월
- 대상 :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개정내용
 - 띄어쓰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(조례 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 -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역별 구성(조례 제14조)
 -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(조례 안 제35조)

V 주요 개정 내용

제명개정 및 띄어쓰기

- 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
- 제1조, 제2조, 제6조제1항, 제6항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”로
-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”로 한다.

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: 조례제14조

- 제14조제1항을 “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를 “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권역별로 둔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”로

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·감면 규정 개정 : 조례제21조

- 제21조제2항제4호 “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”을 “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”으로

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: 조례제33조

- 제33조제2항 “도서관자료 및 오손된 도서관자료는”을 “도서관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자료는”으로

독서문화활동 진흥 규정 신설 : 조례제35조

- 조례제35조 제목 “(문화활동의 전개)”를 “(문화활동의 진흥)”로 한다.
- 조례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또한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민의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.

1.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·개선
2. 독서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
3. 각종 독서단체 등 지원·육성
4. 그 밖의 지역주민 독서문화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

☐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도서관시설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,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동작구(이하 “구” 라한다)구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한다)은 구관할구역 안에 둔다.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, 위원은 해당업무과장,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동작구</u> -----</p> <p>제2조(설치) <u>서울특별시 동작구</u> ----- ----- ----- <u>서관국장</u>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서관국장</u> -----</p> <p>③ ~ ⑤ (생략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동작구</u> -----</p>

<p>제14조(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)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 제21조(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·감면)</p> <p>① 1. ~ 2. (생략) ② 1. ~ 3. (생략) 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. ~ 6. (생략) 제33조(도서관자료의교환·이관·상호대차·폐기 및 제적) ① (생략) ②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 및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 제35조(문화활동의 전개) 도서관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·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.<신설>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>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(제8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</td> <td>성 명</td> <td>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</td> <td>성 명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주 소</td> <td></td> <td>주 소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</td> <td></td> <td>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연 락 처</td> <td></td> <td>연 락 처</td> </tr> </table>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	주 소		주 소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연 락 처		연 락 처	<p>제14조(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권역별로 둔다.</u> <u>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·감면) ①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1. ~ 3. (생략) 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<u>제2조제1항</u>----- ----- 5. ~ 6. (현행과 같음) 제33조(도서관자료의교환·이관·상호대차·폐기및제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망가진</u> ----- ----- <u>제35조(문화활동의 진흥)</u> ----- ----- ----- <u>. 또한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</u> <u>구민의 독서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에</u> <u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.</u> <u>1.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·개선</u> <u>2. 독서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</u> <u>3. 각종 독서단체 등 지원·육성</u> <u>4. 그 밖의 지역주민 독서문화 및 교육</u> <u>증진을 위한 사업</u> ----- [별지 제1호서식]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(제8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</td> <td>성 명</td> <td>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</td> <td>성 명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주 소</td> <td></td> <td>주 소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</td> <td></td> <td>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연 락 처</td> <td></td> <td>연 락 처</td> </tr> </table>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	주 소		주 소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연 락 처		연 락 처
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 락 처		연 락 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신청인 (법인·단체명 대표자명)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 락 처		연 락 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VII

추진 일정

- ☐ 입법예고,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----- 2015. 9.
- 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----- 2015. 10.
- ☐ 구의회 상정 ----- 2015. 10. ~ 11.
- ☐ 공 포 ----- 2015. 11.

붙임 :1. 「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 끝.